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나7886 판결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나788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19가단521172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

담당변호사 윤문수

피 고 B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주식회사 C (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치

담당변호사 이강길

피고보조참가인 D

변론종결 2022. 4. 7.

판결선고 2022. 5. 26.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19가단5211723 판결

주 문

1.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한다(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판결 3면 1, 2행(이하 ‘제1심판결 면 행’이라고 기재할 때 ‘제1심판결’을 생략한다)의 “이하 ‘피고보조참가인 E’이라 한다”를 “이하 참가인 C이라 한다”로 고치고, 제1심판결 이유의 “피고보조참가인 E”을 모두 “참가인 C”으로 고친다.

3면 6행의 “F”를 “H”로 고친다.

6면 11행의 “을나 제14호증”을 “을나 제14, 16호증”으로 고친다.

7면 18행의 “추가로 지출해야 했다.”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로 고친다. 8면 16행의 “문자메시지”를 “문자메시지(갑 제9호증)”로 고친다.

11면 9행의 “계약 해지를”을 삭제한다.

12면 10행의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참가인 C은, 원고가 2019. 3. 29.자 통보서로 최고한 이행기(2019. 4. 6.까지)가 2019. 3. 29.자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주일도 되지 않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초의 공사기간(2018. 12. 10.)이 2019. 1. 15., 2019. 2. 20. 등으로 수차례 연장된 점에 비추어 보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수차례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위와 당초 총 공사기간(2018. 6. 27. ~ 2018. 12. 10.)이 약 5개월 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늦어도 통보일(2019. 3. 29.)로부터 두 달이 되는 2019. 5. 28.경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된다.]』

13면 5행의 “앞서 든 증거들에”를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2 내지 57호증, 갑 제59호증의 각 기재에”로 고친다.

13면 12, 13행의 “실제로 지급하였고, 위 지급내용에”를 “부담하게 되었고(약 3,500만 원은 K에 대한 지급이 유예된 상태이고, 나머지 금액은 실제로 지출하였다), 원고가 부담하게 된 위 공사대금에”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공사계약 특약사항에 따른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1) 참가인 C의 주장 요지

원고가 당초 J가 대표이사인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을나 제15호증), M의 세금 체납으로 착공신고를 할 수 없어 원고와 J의 부탁으로 원고와 참가인 C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 특약사항(갑 제2호증의 1, 10면)에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계약이행의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M(대표 J)이 진다고 명시한 것이므로 참가인 C은 면책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피고의 보험금 지급책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사계약 특약사항(갑 제2호증의 1, 10면)에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계약이행의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M(대표 J)이 진다고 명시된 사실은 참가인 C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4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참가인 C의 모든 책임을 면하게 할 의도로 원고와 참가인 C이 위와 같이 특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위 특약사항은 이 사건 공사계약(2018. 6. 26.) 당시에 계약서에 첨부된 것인데, G와 참가인 C은 그 이후인 2018. 8. 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착공부터 준공 예정일인 2018. 12. 20.까지 책임지고 완료할 것을 각서함’이라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42호증의 1)를 작성하여 주었다.
- ② 참가인 C이 위 이행각서 교부 당시 원고에게 교부한 사용인감계(갑 제42호증의 4)에는 “위의 사용인감은 당사(참가인 C)에서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당사가 귀사(원고)와의 아래 공사(이 사건 공사) 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를 사용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하자는 당사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 ③ 참가인 C이 2018. 6.경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자가 참가인 C, 피보험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위 특약으로 참가인 C을 면책시킬 의사였다면, 참가인 C이 피고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제11조 제1, 3항에 따른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1) 참가인 C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제11조 제1, 3항에 따르면, 주계약 또는 법령상 의무의 금액, 기간 등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생기면 계약자(참가인 C) 또는 피보험자(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알려야 하고, 이를 알리지 않는 경우 피고는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참가인 C이 아닌 그의 하수급인인 G가 하는 것과 ② 원고가 공사대금을 참가인 C이 아닌 G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피고가 부담하는 위험이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피고에게 알리거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

2) 판단

참가인 C이 주장하는 위 ①, ② 사유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제11조 제1항 제4호의 ‘주계약 또는 법령상 의무의 금액, 기간 등 회사(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 C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참가인 C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당우증, 판사 최정인, 판사 김창형